

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

1. 종류 및 방식 :

2. 명칭 :

3. 인증번호 :

4. 제작자 등 성명 :

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
5. 관리자의 성명 :

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
6. 설치장소 :

7. 사용금지 사유 :

☐ 사용검사 불합격, ☐ 정기검사 불합격, ☐ 수시검사 불합격, ☐ 정밀안전검사 불합격

8. 사용금지일 :

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0제1항, 제19조의2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5항, 제16조의26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며, 위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「주차장법」 제29조제2항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
· 군수 또는 구청장(전문검사기관
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)

직인